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민콜110 기반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주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비긴급상담번호 110통합추진단)

2026. 8.

담당	110통합운영과	과장 양동훈	Tel. 02-2100-5101	Fax. 044-200-7960
	110통합운영과	사무관 윤주현	Tel. 02-2100-5069	Fax. 044-200-7960

I

연구용역 개요

1. 연구명 : 국민콜110 기반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2. 연구 목적

-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 국민이 겪는 불편과 혼란
해소를 위해 ‘비긴급 민원상담 및 번호 안내를 110으로 통합’ 사업 추진
- 국민콜110 중심의 통합 민원상담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

3. 연구 개요

- 국내·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실태 분석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사항 도출
 -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운영 근거 규정 조사 및 분석
 - 지방정부·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
- 비긴급전화 국민콜110 통합 법체계 구축 방안 설계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련 법령·행정규칙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 민원·긴급신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 분석
 - 비긴급 상담 개념 및 범위 재정립 등 조문 구체화
 - 범정부콜센터 협의체 개편 및 역할 체계 재정립
 - 상담데이터의 AI 학습, 기관 간 공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상담사 교육·평가 및 보호 체계 설계 등
- 법령 제정안 마련
 - 법령 체계 설계 및 조문 단위 초안 마련(조문별 제정사유서 포함)과
분법에 따른 기존 법령·행정규칙 개정방안 제시
 - 규제영향평가 및 각종 사전영향평가 대응 자료 작성 등

4.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

- 국민콜110 관련 법령 제·개정(안) 수립, 타당성 분석, 법제처 등 관계기관 설명자료로 활용
- 비긴급전화 국민콜 110 통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5. 사업 예산액 : 총 40,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1134-341-260-02(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 종합상담창구운영 - 정책연구비)

6. 사업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3.까지

7. 사업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 요청사항 및 추진방법

1. 주요 과업내용

(1) 국내·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실태 분석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운영 현황 분석
 - 현황, 한계 및 문제점 분석, 개선사항 도출
-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운영 근거 규정 조사 및 분석
 - 중앙부처 콜센터 관련 법령·행정규칙 현황 파악·분석 및 비긴급전화 국민콜110 통합·운영을 위한 법체계 마련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도출
- 지방정부 및 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방·해외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도입시 고려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비긴급전화 국민콜110 통합 법체계 구축 방안 설계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관련 법령·행정규칙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 ※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원, 긴급신고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분석
 - ‘비긴급 상담’의 정의, 비긴급 상담과 민원·긴급신고 상호 역할 구분 및 유기적 협력 방안 등
 - ※ 민원처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112신고처리법, 119긴급신고법 등과 중복·충돌 여부 등 검토 포함
- 범정부콜센터협의체 설계
 - 기존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 현황 분석, 문제점 및 한계 도출
 - 비긴급전화 통합에 걸맞은 범정부 협의체 설계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법제화 방안 포함)

- 상담지식 구축을 위한 행정기관·공공기관 협력체계 마련
 - 상담지식의 생성·수집 및 관리·운영 등을 총괄하는 별도 범정부 조직 구성 또는 범정부콜센터협의체에서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방안 검토 및 법제화 방안 제시
 - ※ 관계기관의 상담지식 제공·검증 의무, 상담사 교육 협력 등 실효적 공조 방안 포함
- 상담데이터의 AI 학습·기관 간 공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민원상담 목적으로 수집된 상담이력 및 녹취 데이터가 AI 학습·모델 평가·타기관 상담 연계 등에 활용될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마련
 - 국민콜110과 연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이동 행위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등) 명확화
 - 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 분석 등) 제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관련 단독 법령(분법) 체계 설계
 - 비긴급 상담 개념 등 정의, 콜센터 조직·운영·상담, 상담자료 구축·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의무(국민콜110담당관 지정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관련, 상담사 교육·평가·보호,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운영·연계 등의 조문 구체화
 - 기존 법령 개정과 법령(대통령령) 제정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기존 법령* 조항과의 중복·충돌 여부 등 검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3) 대통령령 제정안 마련

- 법령 체계 설계 및 조문 단위 초안 마련(조문별 제정사유서 포함)과 분법에 따른 기존 법령·행정규칙 개정방안 제시
- 규제영향평가 및 각종 사전영향평가 대응 자료 작성 등 입법지원

2. 과업 진행방법 및 제출사항

○ 연구용역 착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체계 및 명단, 추진 일정표, 세부 연구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

-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중간점검 시 제기된 보완의견 등에 대해 연구결과물에 반영

▶ 중간점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 일정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 완료보고회 개최

- 정책연구 종료 후 연구과제에 대한 완료보고회 개최

-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평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용역추진방법이 적절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내용을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 연구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인가?

○ 과업수행 성과물 제출

- 중간성과물 : 중간보고서(출력물 20부(예정), 한글·PDF파일)

- 최종성과물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책자 20부(예정), 한글·PDF파일)

※ 추후 보고서별 제출부수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3.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비긴급상담번호 110통합추진단과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타 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비긴급상담번호 110통합추진단에 그 사유를 알리고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추진 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과업 수행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제안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2.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 적용
 - 업체별 제안서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이후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름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⑥ 삭제 <2019. 9. 17.>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2021. 3. 30.>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기술평가는 전문적 연구·조사·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술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3명)와 위원회 과장급 공무원(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고충상담기획과에서 실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18)	○연구과제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제안내용과 과제목적의 부합성	10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8
연구방법 (10)	○연구방법 및 연구방향의 부합 정도	5
	○연구방법·전략의 창의성 및 현실적 타당성	5
연구내용 및 계획 (32)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세부 연구 계획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2
	○연구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적정성 ○연구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10
	○연구수행 의지 및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5
	○추가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실효성	5
연구 수행능력 및 체계 (20)	○참여연구진의 해당분야 경력, 유사연구 및 용역 추진 실적 등 연구 수행능력	10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및 연구원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연구수행 체계의 효율성	10
합 계		80

○ 기술평가방법 및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결과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별로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기재부 계약 예규상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 득점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4. 제안서 기술평가

- 일시·장소 : 입찰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별도 공지
- 평가위원 : 내부평가위원 2명, 외부평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방법 : 집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 방식으로 변경 가능)
 - 집합 방식은 전자입찰 순으로 책임연구자가 발표 및 제안서 설명(약20분)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진행

5.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사실이 나타난 경우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 단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계약조건

- 제안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상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저작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생성형AI활용

-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유출·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생성형AI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입찰 관련 사항

- 입찰자는 입찰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다른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
- 과제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함

IV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가능
- 제안서의 분량은 본문의 경우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권익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해 제출하고 답변 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기술평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붙임 1~7 참조]
- 제출기한 및 장소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 별도 통지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110통합운영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5층
 - 전화 : 02-2100-5069, 팩스 : 044-200-7960

[붙임 1]

제안서 표지

용역명						
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학위	
	소속기관			소속학회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형태	문헌(), 조사(), 실험()					
	단독(), 공동(), 학제간()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위 연구용역참가를 신청하며, 만약 연구용역이 낙찰될 경우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신청인 기관명 :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책임연구원 : (인) 연 구 원 : (인) 연 구 원 : (인) 연 구 원 :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2]

세부 사업제안서 작성요령(목차 예시)

1. 제안개요

- 제안 배경 및 개요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연구의 범위 및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참고문헌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 추진체계

(1)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비중 명시

(2)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연구자별 기술)

- 경력일반
- 주요연구내용
- 유사용역 연구실적

(3) 참여연구진 수준

6. 연구 추진일정 (일정 및 일정별 내용)

- 연구 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개최 일정 포함

7.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8.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붙임 3]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가. 기관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관관련 소개사항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 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천원)

나.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태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관련 연구실적(최근 5년간)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편	편	편	편	편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다) 유사연구용역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실 적					
수 행 중 인 과 제					

(라) 기타 현재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2) 연구원

(가)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나)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원들의 유사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책임연구원의 (나)항 내지 (라)항 활용하여 작성가능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붙임 4]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 목	금 액	구 성 비 (%)	비 고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 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상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비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 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홍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발주한 「국민콜110 기반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기반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중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지, 이슈 페이지,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정책연구보고서 생성형 AI활용 가이드라인

정책연구 보고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1. AI 활용의 기본 목표 및 원칙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AI를 효율적인 보조 도구로 여겨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명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연구 결과에 따른 최종 책임은 연구 책임자가 부담한다.

2. AI 활용의 기준 및 방법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침해나 기밀정보의 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개된 보고서를 제외한 내부자료(내부용 계획서, 중간점검 보고서, 비공개 보고서 등)는 AI 학습이나 검토 등의 목적으로 외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다. 3. 연구 수행 시 준수사항

- ① (저작권)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권리침해·명예훼손)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편견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혐오표현) 생성형 AI에 의한 정보가 특정인이나 특정한 대상을 비난하거나, 특정인의 가치관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정보유출) 생성형 AI로 연구 결과물을 얻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위조작정보·편향)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성형 AI가 결과로 제시한 정보에 오류나 편향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환각현상)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조작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 책임자가 직접 그 출처를 확인하고 참조문헌을 검증하여야 한다. ⑦ (오남용) 생성형 AI의 편의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결과

AI는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저자로 등재할 수 없다.

5.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또한 연구수행기관 등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거나 외부전문가 등에게 평가·자문 등을 의뢰할 때 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